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536호 2017. 12. 21.(목)

훈 령

○ 사천시 훈령 347호 사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2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49호 서포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고시----------8

○ 사천시 고시 제25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10

○ 사천시 고시 제2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 고시----------14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30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16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7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36호(2)

훈 령

사천시 훈령 347호

사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2월 2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시장이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가 공원, 녹지공원과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소공원, 산(등산로)등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는 녹지공원과장, 그 외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동장이 관리주체가 된다.

② 야외운동기구 총괄관리 주체는 체육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예산대책) 시장은 주민의 체력 증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① 관리주체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안내)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자체 보수가 어려운 부분은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표지(제9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앞면] 제8조 관련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

관리번호	
위 치	(시설명 : 000 공원, 00 학교)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일자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제536호(7)

[별지 서식 뒷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관리현황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7-249호

서포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고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서포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서포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서포 비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청정어촌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50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기초생활 기반확충	**합 계**		**500**	
	소 계		**300**	
	비토빌 체험학교 조성	리모델링 : 366.8㎡	300	
지역경관 개선	**소 계**		**50**	
	비토빌 체험학교 경관 정비	건물철거 260㎡ 화단 및 잡목제거 1식 파고라 1개소, 벤치 5개소 등	50	
지역역량 강화사업	**소 계**		**150**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브랜드 개발 1식	100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50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2월 ~ 2019년 01월(5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면	동리			대장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 비토빌 체험학교 조성												
1	서포	비토	30-1	학	2,093	2,093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2	서포	비토	27-5	임	962	962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2) 비토빌 체험학교 경관정비												
1	서포	비토	30-6	학	1,084	1,084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서포 비토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055-831-3135), 서포면사무소(055-831-523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35호(10)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7-25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 12. 15.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17 - 11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17년 12월 14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사토반입을 위한 물량장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2,684㎡(직접:500, 간접:2,184)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7년 12월 20일 ~ 2019년 04월 30일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 주소**
   가. 성 명 : 프라임산업개발(주) 대표 김종진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699-1(죽림동)
8. **점용·사용의 허가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535호(11)

허 가 조 건

1. **허가목적 준수** : 피허가자는 허가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내용 변경시 사전 변경허가 :** 피허가자가 면적, 기간 등 본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본 허가 관련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 이행 등**

가. 해역이용협의서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토사 선적 작업 시 토사의 해상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바지선 주변에 적정 규격 및 규모의 오탁방지막을 배치·운용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토사 운반 시 항행 중인 다른 선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하며, 긴급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시 부유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간조 시에 작업하여야 하며,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작업 중단 및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 및 시설물 운용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주변 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및 해양환경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부식 등의 훼손 사항이 발견될 시 즉시 수리·보수하여야 합니다.

사. 선박 등의 이·접안 및 유류급유 시 유류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 종료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동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자. 동 시설물 운용과 관련한 해역이용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4. 도로법 관련

가. 사토반입을 위한 물량장 관련 차량의 과적·과속운행으로 도로구조 및 안전사고 발생과 도로 침하·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도로사용에 있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나. 사토 선적은 물량장에서만 작업하여야하며, 도로상에서는 일체의 작업행위나 사토 및 기타 물건 등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토 잔해물이 도로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흘러내린 사토는 즉시 치워 깨끗한 도로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 사항들 위반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사법 조치 됩니다.

5. 지시사항 준수 및 이행 : 타 법령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타 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의 관리

가. 설치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대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설치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시설보수,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 주변 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7. 허가사항 취소 또는 행정처분

가. 공유수면관리법령과 허가조건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관리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장래 산업단지 지정 및 공유수면 매립 등을 위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처분으로 인해 피허가자가 입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리청에게 일절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공공 또는 공익사업 등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으며, 불허가 처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관리청의 지시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일체의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 본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사용이 폐지된 경우 또는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피허가자 스스로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동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9. **허가 기간 만료시 연장신청 등 :**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허가(기간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민원 해결 등**

가. 동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사항 등이 발생 할 경우 피허가자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어업피해, 안전사고, 공사과정 중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 시 전적으로 피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허가조건의 이행** : 위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허가자는 본 허가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허가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끝.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7 -2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 12. 21.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7-11호(2017. 12. 14.)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주소
   ○ 성 명 : 프라임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종진
   ○ 주 소 :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699-1(죽림동)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사토 반입을 위한 물량장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 승인번호 : 제2017-14호
   ○ 공사기간 : 2017. 12. 20. ~ 2018. 01. 10.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 2017. 12. 18.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

○ 점용·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35호(16)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7 - 1286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 12. 13.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12. 13. ~ 2017. 12. 28.(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26다2288	벤츠 S63AMG	허*	2017. 12. 7.	소유자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055-831-3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